

2018학년도

제6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19년 1월 7일(월) 10:00

2. 장 소 : 화도관 2층 대회의실

3. 대학평의원회의원(11명)

■참석의원 : 송영출, 천성오, 정인영, 이정훈, 김재요,
정동훈, 정효찬 (7명)

■불참의원 : 김태훈, 윤성혁, 이재현, 고민석 (4명)

4. 안건

- 1)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 2) 광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 3)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 4) 대학원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시행 내규 개정(안)
- 5) 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 개정(안)
- 6) 스마트융합대학원 학사운영 내규 개정(안)
- 7) 교육대학원 학사운영 내규 개정(안)
- 8) 직제 규정 개정(안)
- 9) 사무분장 규정 개정(안)
- 10) 교원 인사 규정 개정(안)
- 11) 명예교수 규정 개정(안)
- 12) 연구년 규정 개정(안)
- 13)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
- 14) 교원 윤리 규정 제정(안)
- 15)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 16)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공학프로그램 운영 규정 개정(안)
- 17) 온라인강좌 운영 규정 개정(안)
- 18) 여비 규정 개정(안)
- 19) 광운대학교 국제교육원 운영 규정 개정(안)
- 20) 광운대학교 부설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규정 개정(안)
- 21) 연구센터 평가 규정 개정(안)
- 22) 취업지도위원회 규정 개정(안)
- 23) 취업전략위원회 규정 개정(안)
- 24) 학위검증위원회 규정 제정(안)

5. 회의 내용 및 결과

- ◆ 성원 확인 후(총 11명 중 7명 참석)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 ◆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의장의 요청으로 광운대학교 학칙, 광운대학교 학칙 시행 세칙,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온라인강좌 운영 규정은 교육지원팀장이, 대학원 통합학칙, 대학원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시행 내규, 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 스마트융합대학원 학사운영 내규, 교육대학원 학사운영 내규는 대학원 교학팀장이, 교원 인사 규정, 명예교수 규정, 연구년 규정, 특별임용교원에 관한 규정, 교원 윤리 규정, 학위검증위원회 규정은 교무처장이,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공학프로그램 운영 규정은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과장이, 직제 규정, 광운대학교 부설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규정, 연구센터 평가 규정은 산학협력단 연구진흥팀장이, 사무분장 규정, 광운대학교 국제교육원 운영 규정은 국제교류팀장이, 여비 규정은 총무팀장이, 취업지도위원회 규정, 취업전략위원회 규정은 경력개발팀장이 설명하는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의원들이 동의하다.

● 안건

1)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 주요 내용
 - 학기당 온라인강좌 이수학점 제한 완화
 - 일반전임교원 책임시수를 15시간에서 18시간으로 환원
 - 대학중점연구소 → 대학중점연구센터로 변경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2) 광운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 주요 내용
 - 부정입학 학생선수에 대한 입학 취소 근거 추가
 - 제출서류 허위기재, 위·변조 등 시험 부정행위 입학 취소 근거 명확화
- 4조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서류의 위조·변조, 시험부정 행위'로 수정하기로 하다.
- 의결내용 : 삼기와 같이 수정한 안을 가결하다.

3)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 주요 내용
 - 석사과정 정원외 외국인에 한해 학점 추가이수로 학위취득 가능하도록 개정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4) 대학원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 시행 내규 개정(안)

- 주요 내용

- 외국어시험 면제조건 New TEPS, TOPIK 추가
- 종합시험 응시횟수 제한 해제
- 제9조(재시험) 1호 '횟수에 관계없이' 문구를 삭제하기로 하다.
- 의결내용 : 상기와 같이 수정한 안을 가결하다.

5) 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 개정(안)

- 주요 내용
 - 석사과정 정원외 외국인에 한해 학점 총가이수로 학위취득 가능하도록 개정
- 제2조(학위수여자격) 바목 '단, 정원외 외국인 학생 중 학위청구논문 제출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추가 6학점 이수로 논문심사를 대체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하다.
- 의결내용 : 상기와 같이 수정한 안을 가결하다.

6) 스마트융합대학원 학사운영 내규 개정(안)

- 주요 내용
 - 학위논문 제출 자격 개정
 - 학위수여 자격 개정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7) 교육대학원 학사운영 내규 개정(안)

- 주요 내용
 - 교직원직계장학금, 외국인유학생장학금 추가
- 외국인학생이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학생보다 장학 혜택을 많이 받게 되면 국내학생에 대한 역차별이며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외국인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타대학의 상황을 파악하여 대학원생 확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외국인학생, 국내학생 모두에게 장학혜택이 적정하게 환원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충하겠다고 답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8) 직제 규정 개정(안)

- 주요 내용
 - 대학중점연구소를 대학중점연구센터로 변경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9) 사무분장 규정 개정(안)

- 주요 내용
 - 국내 협력 관련 업무 주관부서 변경 (국제교류팀→홍보팀)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10) 교원 인사 규정 개정(안)

- 주요 내용
 - 일반전임교원 책임시수를 15시간에서 18시간으로 환원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11) 명예교수 규정 개정(안)

- 주요 내용
 - 명예교수 강의연령 만70세까지로 함
 - 명예교수 강의담당시간을 주당 3시간, 총장의 허가를 받아 6시간까지 허가
- 총장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 최대 6시간까지 담당한다는 것은 모든 결정이 총장에게로 집중되는 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교무처에서 여러 의견을 참고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추후 보완하여 재상정하는 것으로 결정하다.
- 의결내용 : 관련내용을 보완하여 차기 회의에서 재상정 하기로 하다.

12) 연구년 규정 개정(안)

- 주요 내용
 - 연구년 논문 결과물 기준 및 저자 기준 변경
 - 산학협력실적 기준 구체적으로 명시
 - 연구년 결과물 제출 연기 삭제
- 상정안건과 별개로 연구년이 종료된 후 연구실적물을 게재 또는 발간할 때 광운대학교 연구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을 명시함과 관련하여 국문, 영문 문구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해당 규정내용에 대한 논의를 통해 추후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겠다고 답하다.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13) 특별임용교원에 대한 규정 개정(안)

- 주요 내용
 - 겸임교수 자격 변경
 - 겸임교수 담당 강의시간 변경
 - 초빙교수 재임용 절차 변경
 - 초빙교수 임용 연령 제한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14) 교원 윤리 규정 제정(안)

- 주요 내용
 - 광운대학교 교원으로서 지켜야할 가치판단과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도덕성을 확립하고, 대학 설립이념과 교육목표를 실현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15)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안)

- 주요 내용
 - Lab인턴십과정으로 학·석사 연계과정에 지원하는 지원자격, 성적기준, 이수조건 개정
 - 제4조(지원자격 및 신청) 3호 지원자 성적 기준에서 '일반과정'을 '일반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수정하기로 하다.
 - 학·석사 연계과정 운영의 취지는 대학원생의 유치 및 대학원 활성화인데, 학·석사 연계과정을 통해 5년만에 석사학위를 취득하게 된다면 교육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재정적으로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의결내용 : 상기와 같이 수정한 안을 가결하다.

16)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공학프로그램 운영 규정 개정(안)

- 주요 내용
 - 공학프로그램에서 일반프로그램으로 변경 신청사유가 해소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공항프로그램 이수 대상자로 확정
 - 국제기관 교환 학생 또는 단기연수 학생의 학점인정 근거 조항 변경 등
 - 제2조(공학프로그램의 운영) ②항 '학과, 학과(부)장'을 '학부, 학부장'으로 수정하기로 하다.
- 의결내용 : 상기와 같이 수정한 안을 가결하다.

17) 온라인강좌 운영 규정 개정(안)

- 주요 내용
 - 학기당 온라인강좌 이수학점 제한 완화
 - 학기당 이수학점 제한 완화에 따른 졸업학점에서 온라인강좌 이수학점 제한 완화
 - 졸업이수학점 전체를 온라인 강좌로 이수할 수 없다는 문구는 오히려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교무처에서 여러 의견을 참고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추후 보완하여 재심의하는 것으로 결정하다.

- 의결내용 : 관련내용을 보완하여 차기 회의에서 재상정 하기로 하다.

18) 여비 규정 개정(안)

- 주요 내용

- 2명 이상의 동일 목적 출장시 상위 직급자 기준의 여비 지급 적용 가능 항목 확대(운임, 식비 추가)
- 국외출장 내용 수정
 - 1) 교수, 학·처·실·관·대학원장, 부총장 출장 시 지급기준액 인상
 - 2) 국가 및 도시 등급 갱신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름
 - 3) 환율 적용기준 명확화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19) 광운대학교 국제교육원 운영 규정 개정(안)

- 주요 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직무 내용 및 기구 내 구성원 변경
-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 명기 및 강화
- 개설 강좌 운영의 탄력성 제고
- 교육 위탁 및 적용 기준 명확화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20) 광운대학교 부설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 규정 개정(안)

- 주요 내용

- 대학중점연구소 → 대학중점연구센터로 변경
- 연구진 구성 관련 세부내용 추가
- 제11조(연구진) ⑥항을 '전임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은 센터의 임원 및 일반연구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일 경우 연구센터의 해당 업무에 대한 참여를 금한다'로 수정하기로 하다.

- 의결내용 : 상기와 같이 수정한 안을 가결하다.

21) 연구센터 평가 규정 개정(안)

- 주요 내용

- 대학중점연구소 → 대학중점연구센터로 변경
- 목표 위주의 평가기준을 사업수행능력(PQ)로 평가하고자 평가기준 변경
- 기존의 연구소 및 연구센터와 혼동될 수 있으므로 규정명을 '대학중점연구센터 평가 규정'으로 수정하기로 하다.

- 의결내용 : 상기와 같이 수정한 안을 가결하다.

22) 취업지도위원회 규정 개정(안)

- 주요 내용
 - 취업지원팀이 경력개발팀과 현장실습지원팀으로 확대 강화됨에 따라 위원회 위원 추가 및 변경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23) 취업전략위원회 규정 개정(안)

- 주요 내용
 - 취업전략위원회 규정 → 경력개발 및 현장실습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수정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24) 학위검증위원회 규정 제정(안)

- 주요 내용
 - 검증대상자의 학위취득 관련 보고의 진실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해외학 위 취득에 대하여는 최소 1회 이상의 조사를 실시
 - 1차 조사는 정부에서 인정한 기관 및 민간단체의 학위조회 서비스라 갈음할 수 있으나, 2차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위원회를 통한 학위 검증
- 의결내용 : 원안대로 가결하다.

6. 폐회

안건에 대해 의장이 의원들의 추가 의견을 묻고 폐회를 선언하다.